

친애하는 뉴욕 주민 여러분,

업스테이트 및 다운스테이트,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은 주 전체의 위기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생활 속의 폭력으로 인해 주택과 직장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뉴욕주법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차별없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브로셔에서는 그러한 법률 중 일부를 설명하며 고용주가 피해자 신분으로 인해 귀하를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

지원

뉴욕주 법무장관 민권실

28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05
(212) 416-8250
(800) 788-9898 (TTY)
ag.ny.gov

뉴욕주 인권국

One Fordham Plaza, 4th Floor
Bronx, NY 10458
888-392-3644
(718) 741-8300 (TTY)
dhr.ny.gov

뉴욕주 가정 폭력 예방과

26 Federal Plaza, Room 3541
New York, NY 10278
(518) 457-5800
(212) 264-0927 (TTY)
opdv.ny.gov
opdvworkplace@opdv.ny.gov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공정 주거 환경 감독 센터

26 Federal Plaza, Room 3532
New York, NY 10278
(800) 496-4294
(212) 264-0927 (TTY)

주 전역의 전체 리소스 목록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opdv.ny.gov/whatisdv/dvlinks.html

가정 폭력 피해자

자신의 권리 알기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레티샤 제임스



직장에서의 공정한 대우

뉴욕주의 인권법에 따라 누군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고용 또는 해고, 고용 조건, 승진, 휴가 사용 요청 또는 차별 불만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뉴욕 노동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는 피해자가 학대에 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고용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 또는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휴가가 필요한 가정 폭력 피해자는 휴가가 자신의 심각한 건강 상태 또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한 것인 경우, 뉴욕 인권법 및 가족 의료 휴가법의 장애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 조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뉴욕시 및 웨스트체스터 법률은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뉴욕시 인권법과 웨스트체스터 인권법은 고용주가 가정 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또한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가정 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실제 또는 인지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정 주거 환경에 대한 귀하의 권리

집주인이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임대를 거부하거나 연방에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뉴욕주법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퇴거 절차에 대한 변호와 개인적인 소송 권리를 제공합니다.

여성 폭력 방지법은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살고있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8항과 같이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피해자 상태에 따라 바우처 지원을 거부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뉴욕시의 Living in Communities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임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시의 Living In Communities 프로그램은 유자격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주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뉴욕시의 임대인은 Living In Communities 주택 바우처 또는 기타 합법적인 정부 임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Buffalo, Hamburg, West Seneca, Westchester, Nassau 및 Suffolk 카운티도 정부의 임대 지원 차별을 금지합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 뉴욕주법은 기존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임대 계약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뉴욕시법은 폭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거지에서 도망나온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택을 재임대하기 3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타 보호 제도

뉴욕주법에 따라 귀하의 임시 보호 명령을 전자적으로 받아 번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여러 가정 법원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는 직접 출두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임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 공공 편의 시설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임대인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입주를 거부하거나 임대 또는 임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호를 원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학대에 대한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이 조항은 단독 주택 또는 단위 건물이 4개 이하인 소유주가 점유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만 제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인 경우 항상 먼저 911에 전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뉴욕주 인권국

» 법무장관실